

2022년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 일시·장소 : 2022. 5. 20.(금) 10:00~12:10,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 참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6) : 이승한, 최승철, 김수정, 이임혜경, 손영주, 김원규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2) : 김형욱, 노승현
 - 소관부서(2)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상정안건 : 총 8건

-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 의결사항 : 7건(권고 4건, 기각 1건, 이유없음(기각) 1건, 처리기간 연장 1건)

심의결과

총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8건	7건 (각하 1, 권고 3, 기각 1, 이유없음(기각) 1, 처리기간 연장 1)	1건 (권고 1)	0건

결과내역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22-45	22신청-7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각하(원안가결)
의결사항 : 7건(권고 4건, 기각 1건, 이유없음(기각) 1건, 처리기간 연장 1건)			
22-46	22신청-11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원안가결)
22-47	22신청-12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인격권침해	권고(원안가결)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22-48	22의타-1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권고(수정가결)
22-49	22의타-3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권고(원안가결)
22-50	22신청-10	시립시설 직장 내 괴롭힘	기각(원안가결)
22-51	22이의-8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결정 이의 (원사건 21신청-135)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22-52	21신청-128	서울시 공무원 직원에 대한 연수원 이용 차별	처리기간 연장 (원안가결)

□ 보고사항

○ [의안 제22-45호]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2신청-7 (각하) 원안가결
-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신청인이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이 더이상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함에 따라 제3자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제1호에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함.

□ 의결사항

○ [의안 제22-46호]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22신청-11 (권고) 원안가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신청인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민원 내용을 공사 현장의 시공사 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인 신청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업무 편의를 위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의 공사 현장 시공사 관계자인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 [의안 제22-47호] 투자출연기관 직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22신청-12 (권고) 원안가결
- 보고서 작성할 때 “ ” 로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인지 다른 인권침해 인지에 대해 해석상 다들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첫째 행위의 반복성, 둘째 행위의 중한 정도, 셋째 신청인의 주장 취지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판단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함.
-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업무상 훈계나 사회 통념상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위압적인 태도로 피해자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비아냥거리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퇴사를 압박하는 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함

○ [의안 제22-48호]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2의뢰-1 (권고) 수정가결
- 신청인이 11가지 피해를 주장했는데 이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인정이 안되는 주장도 있고 인정된 사실들에 대해서도 1회성에 그치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특히 영어도서 구입 건도 질책은 했으나 피해자 주장처럼 조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피신청인 간의 관계적 맥락을 고려할 때 1회성에 그친 발언을 두고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려움.
- CCTV건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이 경우만 가지고는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감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반복적 행위가 아니라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등의 조치가 있었음. 그러나 CCTV를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래 방향이 아닌 직원들이 있는 곳을 비추게 한 행위 즉, 임의로 조작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로 판단함.

○ [의안 제22-49호]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 22의뢰-3 (권고)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전화했지만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분리 의무를 위반한 것임.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희롱 가해자였던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탄원서에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더라도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등에 관한 내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비밀보호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탄원서에 서명할 당시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탄원서에 서명한 직원에 대한 권고는 하지 않음.
- 피신청인 1이 성희롱 사건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직원에게 성희롱 피해자가 이상하다는 식의 말을 하고, 피신청인 1이 피신청인 3에게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고, 이에 피신청인 3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신청인 1을 두둔하는 말을 한 것은 명백히 2차 가해에 해당하므로 특별교육이 필요함.

○ [의안 제22-50호] 시립시설 직장 내 괴롭힘

- 22신청-10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사과를 강요하고 징계로 간다는 말로 압박하고 재조사 요구를 묵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 주장이 다르고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각함.

○ [의안 제22-51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결정 이의

- 22이의-8(원사건 21신청-135)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은 추후 해당 복지시설이 입소를 거부하면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함. 이의신청은 원사건 의결내용에 대

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의 신청인의 주장은 이의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함.

- [의안 제22-52호] 서울시 공무원 직원에 의한 연수원 이용 차별
 - 21신청-128 (처리기간 연장) 원안가결
 - 이 사건 차별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서울시와 공무원 노조 간 단체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리 기한을 2022. 12. 31.까지 연장하기로 함.